

1. 교통사고 피해자 보상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요구

2. 공제자금의 운용이나 그 밖에 공제사업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요구

3. 공제조합의 업무 또는 회계에 대한 조사

4. 공제조합의 장부나 그 밖의 서류에 대한 검사
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조사나 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 또는 검사 7일 전까지 조사 또는 검사할 내용, 일시 및 이유 등에 대한 계획서를 공제조합에 보내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내지 않을 수 있다.

③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조사나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, 조사나 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장소에 출입할 때에는 출입자의 성명, 출입시간 및 출입 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.

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업무 운영이 적정하지 않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교통사고 피해자 및 공제가입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.

1. 업무 집행방법의 변경

2. 자산 예탁기관의 변경

3. 자산 장부가격의 변경

4.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

5.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 처리

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제38조제1항의 기준을 위반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제조합으로 하여금 자본금의 증액 및 주식 등 위험자산의 처분 등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을 위한 방안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
1. 해당 요구가 공제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정한지 여부

2. 해당 요구가 공제조합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지 여부

제40조(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·도지사에게 위임한다. <개정 2024. 4. 16.>

1.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반납하는 택배서비스전용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접수

2. 제7조제3항에 따른 택배서비스전용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반환
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생활물류서비스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관계기관·단체 또는 법인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1.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·변경등록 신청의 접수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

2.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

3. 법 제25조에 따른 창업의 지원

4.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표준 제정 지원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

5.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실시,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원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평가

6.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활물류시설의 설치 등 지원

7.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 작성에 관한 자료수집 및 검토

8.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서비스약관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

9.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에 대한 평가,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공표,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원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청

10.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생활물류 쉼터의 설치·운영

③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다른 행정기관의 장은 같은 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생활물류서비스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관계기관·단체 또는 법인 중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